

공적연금 소득대체율과 재정전망

The Income Replacement Rates and Financial Prospects of Korea's Public Pension Plans



신화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적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있어 크게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둘 수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최근 단행된 공적연금 개혁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약화되면서 연금제도 본연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재정문제와 적정소득 보장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정책 목표에 있어 소득대체율은 퇴직전 소득을 연금소득이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의미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중심으로 소득대체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1. 들어가며

최근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공적연금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 등 공적연금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연금수급자가 늘어나고 제도가 성숙해가면서 국가재정 측면에서는 전체 예산에서 연금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개인별로도 은퇴후 실제로 본인이 직접 연금을 수급하게 되거나 이미 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므로 공적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규모는 급격하게 늘어나 현재 489조 원에 이르고 있으나, 수급부담간 불균형으로 인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1998년

과 2007년 개혁 모두 재정의 지속가능성(financial sustainability)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있어 크게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social sustainability)을 목표로 둘 수 있다¹⁾.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말그대로 재정방식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조세 등 부담수준 인상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를 뜻하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연금제도 본연의 목적에 맞게 은퇴, 사망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제공하는 데 있다.

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2가지 목표는 서로 상반되는 측면이 있는데,

1) OECD(2014), *Pensions at a Glance 2013*.

2007년 국민연금 개혁에서는 재정안정화를 위해 급여수준을 낮추었으나 상대적으로 약화된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완책이 함께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가입 기회가 없었던 연금제도 도입 당시의 노령층을 위한 소득보장과 함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하하는 대신 조세방식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2014년에는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면서 연금을 2배로 인상하였다. 공무원연금 또한 2000년 법개정을 통해 연금회계상 부족분을 정부에서 보전금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점차 늘어나는 바람에 2009년, 2015년 법개정을 추가로 단행하였다. 최근 진행된 개혁 모두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재정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부담 수준을 올리고 급여는 낮추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금제도에 있어 재정문제와 적정소득 보장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 정책 목표에 대해 소득대체율은 퇴직전 소득을 연금소득이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의미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중심으로 소득대체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공적연금 급여수준과 재정현황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현재 제도성숙 단계 이전이라 매년 부과방식 보험료율보다는 높은 9%를 보험료로 걷고 있어 기금이 적립되고 있는 상태로 기금규모가 2015년 3월 기준 489조원에 이르고 있다. 부과방식 보험료율은 1990년 0.1%에서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수급자가 발생하면서 2010년에는 3%를 넘어섰고 이후에도 점차 증가하여 2014년에는 3.6%로 나타난다.

국민연금 수급자 규모는 2014년말 기준 375만 명으로 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급여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다. 노령연금의 경우 2014년에 매월 평균 33만원을 수급하였는데, 제도 도입초기 5년을 가입하더라도 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던 특례노령연금²⁾ 수급자를 제외하면 48만원으로 나타난다.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국민연금 급여의 특성상 본인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대체율은 아니지만, 노령연금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³⁾ 대비로 살펴보면 도시자영자로 확대된 1999년 이후 10년째인 2009년 13.9%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4년에는 16.9%임을 알 수 있다.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규모가 153만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291만명 중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제도 도입초기 경과조치로 적용한 특례노령연금을 제외한 10년 이상 연금수급자의 경우 24.1%에 이르고 있다.

2) 공무원연금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도입된지 34년

2) 1988년 제도로 도입이나 1999년 도시자영자 적용 확대 당시 이미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기존 종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경과조치로, 5년만 가입하더라도 60세부터 특례노령연금 지급.

3) 이 때 소득은 최근 3년간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물가로 재평가한 국민연금 급여산식 A값으로 하여 소득 대비 노령연금액을 살펴본다.

표 1. 국민연금 재정현황

(단위: 조원)

연도	총지출	급여지출		총수입	보험료수입	국민연금 기금	부과방식 보험료율
			노령연금				
1988년	0	0	-	0.5	0.5	0.5	0.0%
1990년	0	0	-	1	0.8	2	0.1%
1999년	4	4	0.3	9	9	47	1.2%
2000년	2	2	1	15	10	62	1.4%
2005년	4	4	3	27	19	164	1.7%
2006년	5	5	3	31	20	190	1.9%
2007년	6	6	4	35	22	220	2.2%
2008년	7	7	5	32	23	235	2.4%
2009년	8	8	6	32	24	278	2.8%
2010년	9	9	7	39	25	324	3.1%
2011년	10	10	8	42	27	349	3.2%
2012년	12	12	9	46	30	392	3.5%
2013년	13	13	11	47	32	427	3.7%
2014년	14	14	11	49	34	470	3.6%

주: 1) 총지출은 급여지출 이외 관리운영비 등 포함.
 2) 총수입은 보험료수입 이외 기금투자수익 포함.
 3) 부과방식 보험료율은 해당연도 부과대상 소득 대비 급여지출 비율.
 4)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시가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 각년도말 「국민연금 월별통계」
 부과방식 보험료율은 저자 추정

표 2. 국민연금 평균연금액 현황

(단위: 월액, 만원)

연도	국민연금	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산식 A값 / 대비 노령연금
		노령연금 (특례연금 제외)	장애연금	유족연금	
2009년	24	24	38	22	13.9%
2010년	26	26	39	22	14.7%
2011년	28	28	40	23	15.4%
2012년	30 (40)	31 (47)	41	24	16.3% (24.5%)
2013년	31 (41)	32 (47)	42	24	16.7% (24.5%)
2014년	32 (42)	33 (48)	42	25	16.9% (24.1%)

주: 해당연도 국민연금 A값은 직전년도 3년간 물가를 반영한 평균값을 뜻함.
 자료: 국민연금 평균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각년도말 「국민연금 월별통계」
 국민연금 A값은 국민연금공단(2014) 「국민연금 통계연보」

만인 1993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였고 1997년 IMF에서 단행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직자가 갑자기 증가하면서 기금규모는 1997년말 6조원에서 2000년말 1조 8천억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재정 악화로 인해 수입과 지출간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매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2000년 법개정을 단행하면서 2001년부터는 기금회계와 별도로 정부보전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법개정 이후 국고보조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면서 2009년에는 2조원에 육박하게 되어 재정안정화를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제도를 개혁하였다. 이 때 보험료율을 높이고 급여를 낮추는

시기를 점진적으로 적용하고 연금수급연령 연장 등 신규 입직자부터 적용하는 부분이 일부 있다. 따라서 법개정 후 곧바로 재정절감 효과를 보기에 는 한계가 있었고, 2009년 이후에도 국고보조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과방식 보험료율 또한 현재 보험료율 14%를 웃돌고 있어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으로는 급여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는 구조이고 부과방식 보험료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규모 또한 증가할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급여지출에서 국고보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 2014년에는 26%까지 증가하였다.

표 3. 공무원연금 재정현황

(단위: 십억원)

연도	총지출	급여지출	총수입	보험료수입	국고보조	공무원연금기금	급여지출 대비 국고보조	부과방식 보험료율
2001년	2,961	2,902	2,907	2,849	60	2,090	2.1%	11.2%
2005년	4,703	4,155	4,094	4,056	610	3,830	14.7%	11.3%
2006년	5,055	4,558	4,408	4,365	648	4,223	14.2%	11.5%
2007년	5,575	5,069	4,586	4,526	989	4,804	19.5%	12.3%
2008년	6,290	5,731	4,861	4,787	1,429	4,686	24.9%	13.2%
2009년	6,747	6,341	4,844	4,785	1,903	5,187	30.0%	14.6%
2010년	7,290	6,864	5,983	5,908	1,307	5,831	19.0%	14.6%
2011년	7,939	7,530	6,581	6,531	1,358	6,011	18.0%	15.5%
2012년	8,895	8,304	7,199	7,147	1,696	6,358	20.4%	16.3%
2013년	9,484	9,067	7,485	7,430	1,998	8,367	22.0%	17.1%
2014년	10,270	9,818	7,715	7,660	2,555	8,527	26.0%	17.9%

주: 1) 총지출은 급여지출 이외 관리운영비 등 포함.
 2) 총수입은 보험료수입 이외 연금이체부담금 등 기타수입 포함.
 3) 부과방식 보험료율은 부과대상 소득 대비 급여지출 비율.
 자료: 공무원연금공단(각년도) 「공무원연금 통계연보」
 부과방식 보험료율은 추정

표 4. 공무원연금 평균 연금액 현황

(단위: 월액, 만원)

연도	공무원연금	평균 연금액	유족연금	기준소득 평균 대비 퇴직연금
		퇴직연금		
2013년	228	229	155	55.6%
2014년	233	235	155	56.2%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각 연도별 「공무원연금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추정

표 5. 가입시기별 국민연금 지급률(현행 제도)

구 분		1988년 ~1998년	1999년 ~2007년	2008년	2009년~2027년	2028년 부터
가입연수당 지급률		1.75%	1.5%	1.25%	매년 0.0125%씩 인하 (2015년 1.1625%)	1.0%
소득 대비 연금액 비중 (국민연금 평균소득자)	40년 가입	70 %	60 %	50 %	매년 0.5%씩 인하 (2015년 46.5%)	40%
	20년 가입	35 %	30 %	25 %	(2015년 23.25%)	20%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014년 기준 39만명⁴⁾으로 매월 평균 233만원을 수급받고 있는데 이는 재직 공무원 평균소득의 56.2%로 절반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공무원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매년 가입할 때 마다 늘어나는 대체율 또한 2% 이상이었으므로 기존 연금수급자는 재직자 평균 소득의 절반 이상인 연금을 매월 지급받고 있다.

3. 소득대체율⁵⁾과 재정전망

1) 국민연금

2015년 현재 국민연금의 연금지급률은 가입연수 당 1.1625%로, 매년 0.0125%씩 감소하여 2028년에는 1%로 인하될 예정이다⁶⁾. 즉 국민연금 가입 평균소득자의 경우 2028년부터는 매년 가입할 때 마다 가입기간 소득 대비 1%씩 연금액이

4) 정부부담인 장해연금 수급자 2,940명은 제외하고 연금회계상 급여지출인 퇴직연금과 유족연금만 고려

5) 한편 소득대체율은 일반적으로 퇴직전 소득 대비 은퇴후 받게 되는 연금액 비율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이 때 퇴직전 소득과 연금액 산출방법에 따라 소득대체율의 의미와 분석 목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생애 기간동안 받게 되는 연금수급액을 퇴직 전까지 총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대체율을 산출할 수 있는데, 소득(근로기간동안 경제성장을 반영하여 재평가하는 등)과 연금(생애기간고려, 연금수급시점 기준, 세제 감면 등)을 어떻게 산출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음.

6) 40년을 가입한다면 국민연금 전체 평균 소득자의 경우 소득 대비 연금액 비중이 2015년과 2028년 각각 46.5%와 40%임을 뜻함.

증가한다는 것을 뜻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현행 제도인 40%(40년 가입)와 50%로 인상할 경우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전망하였다. 사실상 국민연금의 법정 소득대체율 40%는 40년동안 가입을 기준으로 한 만액연금으로, 동일한 관점에서 OECD 34개국의 평균 소득대체율이 40.6%⁷⁾라는 점에서 낮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 가입기간을 고려한다면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연금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이 낮고 미래에 제도가 성숙하더라도 실제 가입기간은 장기적으로 23년⁸⁾이므로, 소득보장에 있어 급여수준의 적절성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다. 소득대체율 50% 적용시점은 분석을 위해 현행제도와 마찬가지로 2028년으로 하고 2015년 46.5%에서 매년 약 0.27%씩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전망결과, 현재 제도를 반영한 급여지출규모는 2015년 GDP 대비 1.2%에서 2030년 2.8%로 증가하고 이후에도 그 추세를 유지하면서 2050년에는 6.3%, 2070년에는 8%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급여지출이 기존에 비해 늘어나면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뚜렷해져서 2050년에는 GDP 대비 7.4%, 2070년에는 9.9%로 전망되어 소득대체율 40%에 비해 2050년에는 GDP 대비 1.1%p, 2070년에는 1.9%p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출 증가에 따라 부담수준은 얼마나 증가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부과방식 보험료율을 살펴 보면, 현재는 보험료를 9%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연금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면서 2030년에 10%로, 9%를 넘어서게 되고 2050년에는 2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2차례 개혁을 통해 급여수준은 인하하였으나 20년 넘게 보험료율을 올리지 못해 여전히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금지급률을 가입연수당 1%로 한다고 하더라도 9%라는 보험료율이 수지균형 보험료율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늘어날 지출에 비해 보험료 부담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예로 2070년까지 기금소진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14.1%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연금지급률을 현재 수준에서 1.25%⁹⁾로 인상할 경우 보험료율은 16.2%로 현행제도에 비해 2.1%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공무원연금

작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올해 5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 국회에 기구를 설치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기나긴 논란 끝에 올해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보험료 부담은 높이고 급여는 낮추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2009년에 연이어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금번 개정안에

7) OECD(2014), *Pensions at a Glance 2013*.

8) 2070년 기준(저자 계산).

9) 40년을 가입할 경우 평균 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50%로, 분석을 위해 2015년 기준 46.5%에서 2028년 50%까지 매년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

서는 2009년 법개정에서 지급개시연령 인상과 유족연금 급여 인하 등 2010년 신규 입직자부터 적용하던 부분을 폐지하고 임용시기와 관계없이 급여수준을 인하하고 있어 신규 입직자와 기존 공무원 간 차별성을 없앴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재정 안정화를 위해 급여수준을 낮추고 당분간 연금인상을 동결하고 보험료율을 높이는 반면 연금수

급을 위한 최소 재직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연금수급권을 확대했다. 한편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은 2014년말 기준으로 418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직종과 직급별로 소득차이가 큰 만큼 <그림 2>와 같이 소득하위와 상위간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급여수준을 낮춤으로서 상대적으로 소득하위 공무원의 연금이

그림 1. 국민연금 재정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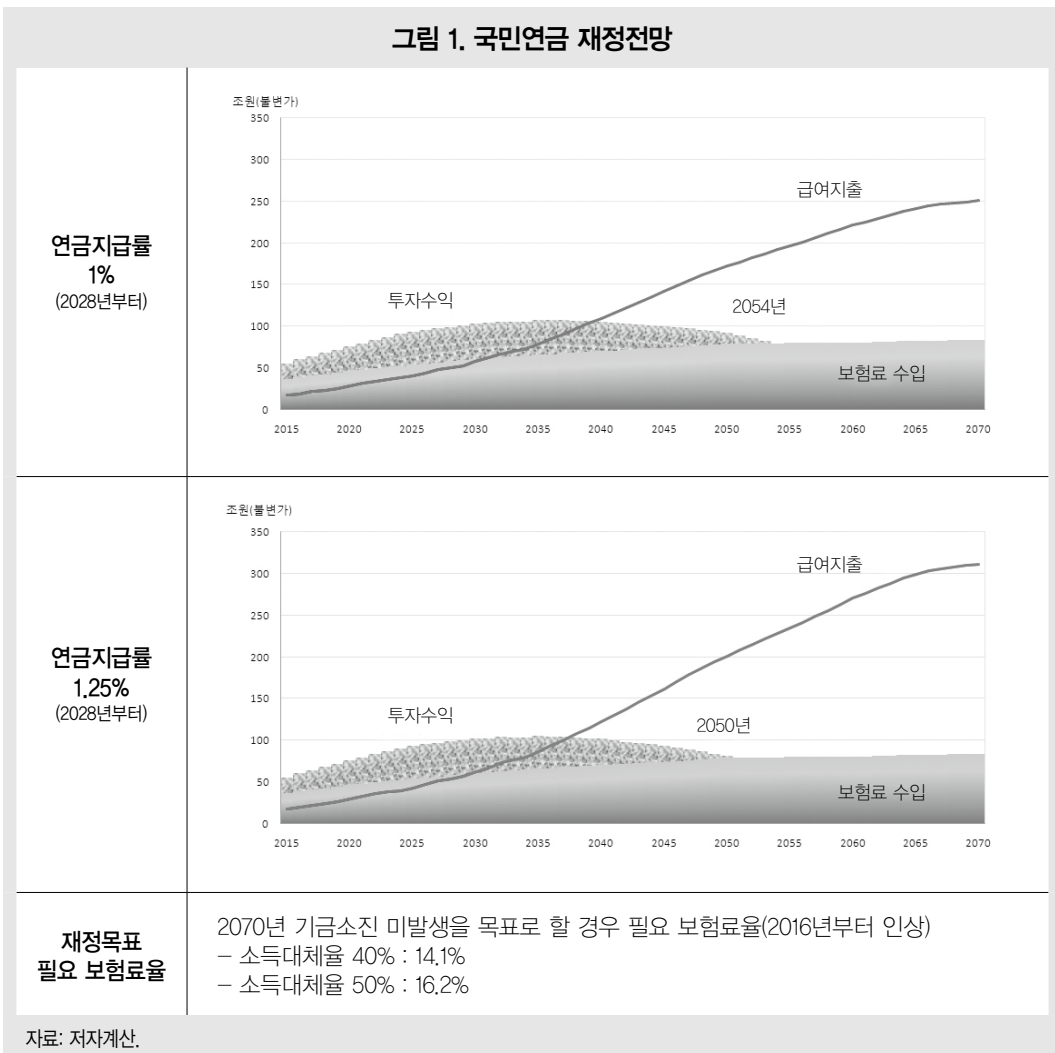


표 6. 2015년 공무원연금 개정법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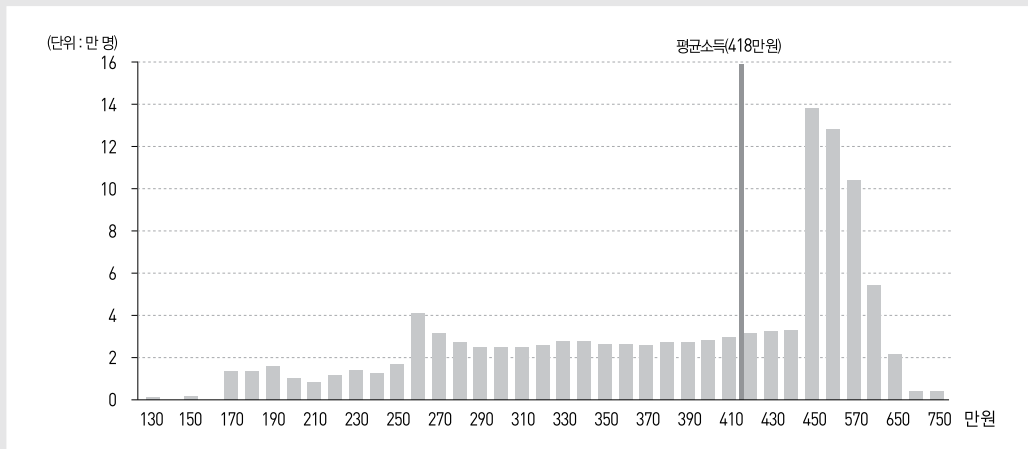
구 분	현행법	개정법(2016년 1월부터 시행)
기여율 인상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의 14% (공무원과 정부 각각 7%씩 부담)	-기준소득월액의 18%(2020년부터) 2016년 16%로 인상한 이후 매년 0.5%씩 인상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상한 인하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의 1.8배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의 1.6배
재직기간 상한 연장	-최대 33년 반영	-최대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 (2016년 재직기간에 따라 단계적 연장) 재직기간 21년 이상 : 33년 재직기간 17년~21년 미만 : 34년 재직기간 15년~17년 미만 : 35년 재직기간 15년 미만 : 36년
최소 연금 수급기간 단축	-20년	-10년
급여수준 인하	-재직기간당 1.9%	-재직기간당 1.7%(2035년부터) (2016년부터 매년 0.022%씩 인하)
급여산식에 소득 재분배 기능도입	-	-연금지급률 1.7% 중 1%에 소득재분배 도입 소득재분배가 도입되는 1%에 대해서는 본인소득과 전체 평균소득 각각 1:1 비중
연금지급개시 연령 연장	65세(2010년 임용자부터) ※ 단, 2010년 이전 임용자는 60세	-2016년 60세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2033년부터 65세 적용 ~2021년 : 60세(5년간) ~2023년 : 61세(2년간) ~2026년 : 62세(3년간) ~2029년 : 63세(3년간) ~2032년 : 64세(3년간) 2033년~ : 65세 ※ 단, 1996년 이전 임용자는 적용제외(종전 규정 적용)
연금액 동결 (2020년까지)	CPI에 따라 매년 연금액 조정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연금액 동결 (기존 연금수급자도 적용)
유족연금 급여수준 인하	-퇴직연금의 60%(2010년 임용자부터) ※ 단, 2010년 이전 임용자는 70%	-퇴직연금의 60% (임용시기 상관없이 2016년 유족연금 발생부터) ※ 단, 기존 연금수급자는 종전 규정 적용
기타		-비공무상 장애연금 도입 (공무상 장애연금의 절반 지급) -150만원(최소한의 생계비 수준)은 연금 압류시 금지 -분할연금제도 도입(이혼시 연금액의 절반 지급)

표 7. 가입시기별 공무원연금 지급률(2015년 개정안)

구 분		~2009년	2010년~2015년	2016년~2032년	2035년 이후
가입연수당 지급률		2.5% (2.0%)	1.9%	매년 0.022%씩 인하	1.7%
소득 대비 연금액 비중 (공무원 평균 소득자)	33년 가입	76%	62.7%	매년 0.726%씩 인하	56.1%
	20년 가입	50%	38%		34%

주: 1) 2010년 이전에는 연금지급률이 재직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했는데, 20년까지는 2.5%, 20년 이후에는 2%
2) 2016년부터 시행하는 개정법에는 최대 가입기간이 36년으로, 2035년 이후에는 소득대비 연금액 비중은 61.2%

그림 2. 공무원 기준소득 월액별 분포(2014년말 기준)



자료: 공무원연금공단(2015) 「공무원연금 통계집 2014」

더 낮아질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완전 소득비례연금방식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소득상위는 절대 연금액 수준을 낮추고 소득하위는 상대적으로 급여를 높이는 등 소득수준에 따른 급여차를 완화시키고자 하였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연금지급률 1%에 대해

서만 소득재분배¹⁰⁾ 기능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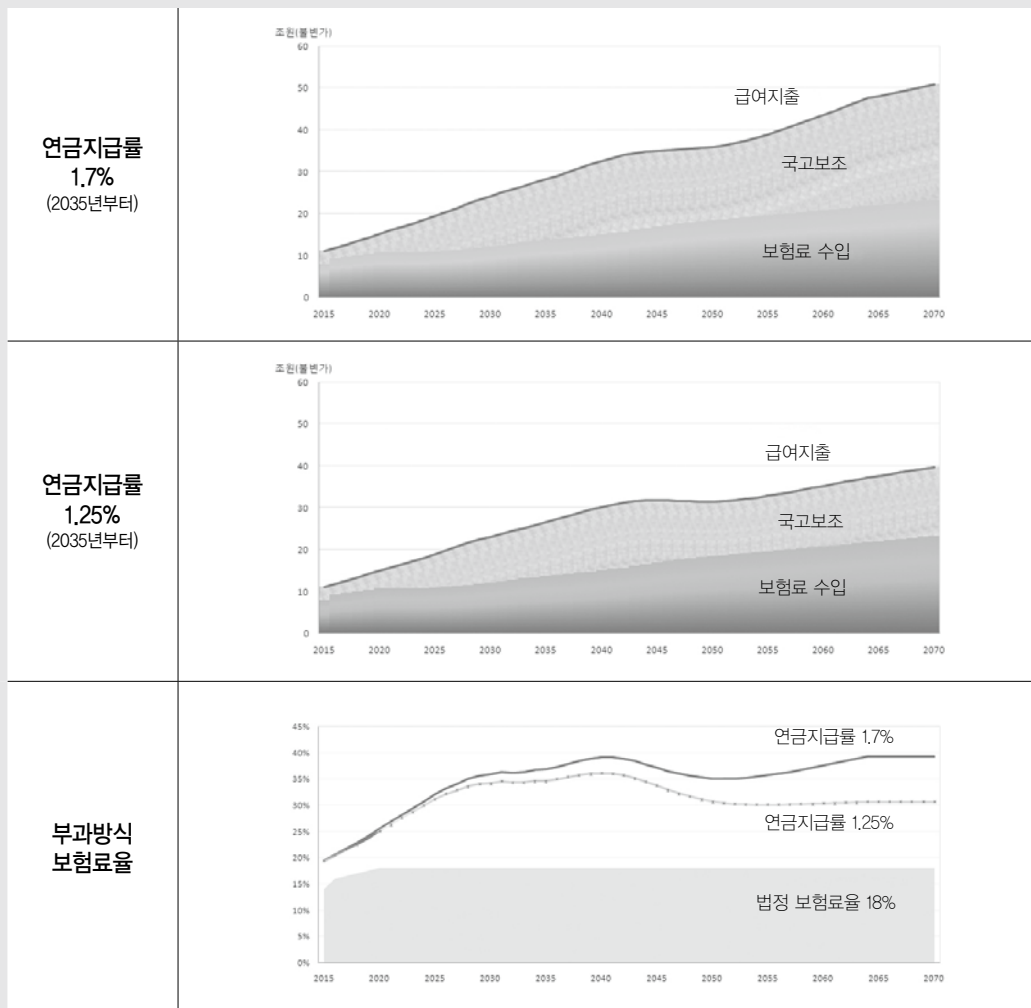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15년 개정안 연금지급률 1.7%(2035년부터)와 연금지급률을 1.25%로 인하할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6년부터 시행하는 개정안을 반영할 경우 급여지출은 2015년 GDP 대비 0.9%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0) 소득재분배 부분은 전체 연금의 29.4%

2050년 1.3%, 2070년에는 1.6%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금지급률을 1.25%로 낮출 경우 개정안에 비해 급여지출규모가 점차 감소하면서 장기적으로 감소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반영하더라도 부과방식 보험료율은 당장 보험료율 18%를 넘어서서 2020

년에 28.2%, 2040년에는 39.1%까지 증가하나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여 2050년에 35.1%로 나타나고 있다. 급여지출에서 차지하는 국고보조금 비중 또한 매년 증가하여 2030년대부터는 절반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15년 제도개혁을 통해 국고보조금 등 재정부담은 상대적으로

그림 3. 공무원연금 재정전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감소하였으나 매년 국고로 지원해야할 부분은 상당 부분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금지급률을 개정법보다 낮출 경우 국고보조금은 매년 투입되나 2030년대 급여지출의 절반을 넘어선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여 40% 초반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4. 나가며

올해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 최근 공적연금 개혁이 재정적 문제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함께 전반적인 공적연금 체계에 대해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문제와 함께 적정급여수준 즉 소득대체율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편 공적연금 재정전망 본연의 목적에는 인구 고령화나 저출산, 경제저성장 등 제도 외적인 충격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에 수입 지출의 추이를 분석

함으로서 장래에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어떠한 준비를 해야하는지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 등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기금적립 추이나 급여지출 변화 등에 중점을 두고 전망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장기전망을 토대로 미래 지출 증가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올리든 조세로 일부 부담하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공적연금제도의 목표 중 하나인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소득대체율이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부담수준은 그대로 둔채 소득대체율을 종전보다 인상하게 되면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나빠지게 되고, 반대로 소득대체율을 낮춘다면 상대적으로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양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대체율은 다분히 재정적 측면만 고려해서 결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담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막연하게 결정해서도 안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합의가능한 적정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선택해야할 것이다. 